

제 415 호

1973.11.1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시
편집 : 문화정보실장 김 전호
전화 75-788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802 호 :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 3

제 803 호 : 서울특별시 시시유재산조례 폐지조례 4

◎ 규칙

제 1328 호 :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 개정규칙 4

◎ 공고

제 212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6.

◎ 사명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광포한다.	제 2 이상의 재개발지구에 하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973. 11. 17 서울특별시장 양태식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실 시한다. ①. 재개발 사업지구 및 복제가구점 이자구내 토지 및 건축물에 가격 평가액의 설정에 관한사항 ②. 시장이 부의하는 가격평가와 관 련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조례 제 802 호 서울특별시재개발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 인 이상 1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어 부제 원장을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9 조 제 3 항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에 (이하 «영»이라 한다) 제 29 조 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재개발 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조 (설치)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에 둔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재개발사업지구 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 29 조 제 3 항 제 1 호의 위치에 위치되거나 아니하는 범위안에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 1 위원과 반수 의 출석과 결석위원과 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에는 의장이 설정권을 갖는다.
 제 7 조 (회기록) 위원장을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한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조에 시행에 반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1. 1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서울특별시 조례 제 803 호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 316 호 (1963. 12.

24)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 일사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3. 11. 1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28 호

서울특별시 동작 일사규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 일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적용) 서울특별시 동에 두는 별정직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동장의 임용 및 보고) ① 동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일시조차법 제 4 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45세 미만인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을 다른 동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을 임명하거나 전보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불량한때
제 3 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동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⑥ 동행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4 조 (신원보증) 구청장을 동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 제 4 호의 2 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동행정 개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당연퇴직) 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 7 조 (동장의 경제사유 및 정체의 종류)
1. 55세에 달하였을 때 2.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법제 31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1) 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대한 성체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직권면직) ① 동장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이규칙 또는 이 세칙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동작으로서의 출신과 혼상을 행위를 하였을 때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행정구역의 폐지, 분합 또는 청원의 개폐로인하여 정월이 초과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주민의 신망을 잃고 저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5. 동행정설적심사 결과 그설적이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으로 관무 설적이 국회 불량한때 ③ 경제의 종류는 과연과 경제으로 한다.
	제 8 조 (동장선제위원회) ① 주어 동장의
	정체를 위하여 동행정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9-6 제 4153:

시 보

1973. 11. 19.

(3)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각각 되며 위원은 각인, 괴장증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출장소 만한 등장에 대한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위원중 1명이 상을 당해 출장소 괴장증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인사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 6 조 (징계절차) ① 등장의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행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2/3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사무위임) 이 규칙중 출장 소 괴장증에 대한 구청회의 권한은 당해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 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2 호

일반의 주택지 조성사업
안로 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4 호 (71.10. 12)로 선시 계획 인가를 받았던 일반의 주택지 조성 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 제 85조 제 1항 및 제 46조 제 3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판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광활구청·시민총사관에 각각 배치하여 모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3. 11. 16.

서 울 특 별 시 강

- 사업집행지 : 시내 판악구 신림동(51)
- 사업명 : 일반의 주택지 조성사업
- 준공면적 : 7,800평
- 사업시행자 : 시내 경동포구 당산동 4가 1번지 이재화
- 사업기간 : 착공 : 71.10.27.
준공예정일 : 73.9.30.
- 준공년월일 : 1973. 11. 17.
- 준공도면 : 협성인 증도면 (생략)

제 415 호

시

보

1973.11.19.

9-7

사 령

◎ 1973.11.15.

성 북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 박석웅
동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 김영조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조성환
아동보호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도 북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 김현국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운동장 근무를 명함.
운동장 지방행정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서기보 심예철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송무용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행정 이선 경영원 근무를 명함.
양동도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석대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73.11.16.	
지방행정주사보서보의	임한.
1호동을 금함.	
부녀자	근무를 명함.
박용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이	임한.
1호동을 금함.	
용산구	근무를 경감.
설연재	
지방행정주사보서보이	임한.
1호동을 금함.	
종로구	근무를 경감.

오 세 흥	성 동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총 영 속
지방행정 주사보시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1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이남재		
영등포장소 근무를 명함.	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		
	도 경 속 자동차정비창 지방행정 주사보 고진규		
지방행정 주사보시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1 호봉을 급함.	성북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철상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양노원 근무를 명함.		
	이 봉 화 성동구 지방행정 주사보 양홍석		
지방행정 주사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1 호봉을 급함.	용산구 행정주사 이명준		
죽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 기 기록	조기복		
제주도 선출을 명함.		◎ 1973. 11. 20.	
성동구산업과 행정주사보	김동영 양주군 농촌지도사 조성원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성동구산업과 지방행정 주사보	김태수 농촌지도사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5호봉을 급함.	
충무파 지방행정 주사보	손동수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유효호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박종주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제 415호

시 보

1973.11.19.

9-9

여 은 회 명 할.

지방간호기원보서보에 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과 양창오 (방역과장)
1호봉을 금함.	동대문구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방역과장) 기구판 김학영
마포구보건소 방역과장 직무내력을 증명하는 명함.	동대문구보건소(방역과장) 기구판 이종화
	영등포구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서 을 육 별 시 장